

인천대 문화대학원
원우회 회칙

2024년 03월 05일

인천대 문화대학원 원우회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인천대 문화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학습조직으로서 인천대 문화대학원 원우회 발전을 선도하고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친목과 우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국은 인천대 문화대학원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정례학습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2.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3. 회원 권익신장을 위한 대내외 활동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인천대 문화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제6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단,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 한다

제7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 납부와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8조 (휴회 및 재입회. 자격상실)

1. 휴회 및 재입회 : 개인 사정으로 휴학 시 자동으로 휴회하며, 잔여회비는 원우회와 협의 하여 정리한다, 복학 시 자동으로 재입회하며, 단 회비는 전액 납부하여야 재입회할 수 있다.
2. 자격상실 : 원우회의 명예를 훼손한자. 회비미납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과기간 (6개월)을 두고 탈회 및 제명자로 지정 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1명 (3차수 기수회장)
2. 부 회 장 : 1명 (1차수 기수회장)
3. 총 무 : 1명 (3차수)

제10조 (임원의 선출) 본회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은 각 기수 총회에서 선출 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분담한 회무를 수행하며, 회장 유고 시 회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회의 행정 및 회계 운영을 총괄하고 본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총 회

제13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총회에 참석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 (소집)

1.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1/2이상의 결의에 따라 이를 소집한다.
4. 총회 소집장소는 7일전에 공지하거나, SNS단체대화방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의결사항) 총회에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결산 및 회계 승인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안건

제16조 (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전체회원의 1/2이상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위임은 SNS단체대화방의 본인 위임의사를 포함할 수 있다.)

제17조 (회의)

1. 월례회의는 매월 정기적으로 네번째 목요일에 개최한다.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기타 본회 활성화를 위해 회장단 회의,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18조 (회비) 본회의 년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회 원 : 이십만원 (200,000원)
2. 기타 재원은 협찬금으로 충당한다.

제1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경 조

제20조 (경조금 및 화환)

1. 본회 경조사비는 본회에서 경조화환을 지원한다.
2. 경조사 범위는 양가부모님(처가,시가) 및 본인, 배우자, 자녀로 한정한다.

제7장 총동문회 활동

제21조 (총동문회 활동)

1. 본회는 총동문회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2. 총동문회 행사 시 경조화환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부칙

1. (회칙개정) 본회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하며, 1/2이상 참석회원과, 참석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회원 결의에 따른다.
3. 본회 제정 회칙은 202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